

이천시 체육진흥 조례

소관부서 : 체육진흥과

제정 2013 · 10 · 1 조례 제1007호
일부개정 2014 · 12 · 31 조례 제1102호
(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전부개정 2020 · 6 · 30 조례 제1610호
일부개정 2022 · 12 · 28 조례 제1888호
일부개정 2023 · 3 · 14 조례 제1908호
일부개정 2024 · 9 · 30 조례 제214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이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이천시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화합과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전문체육”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.
- “생활체육”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.
- “체육동호인조직”이란 같은 종목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.
- “체육단체”란 체육에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2장 분야별 체육진흥

제3조(전문체육의 진흥)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양성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이천시 체육진흥 조례

1. 체육회 조직의 관리 · 운영
2. 우수경기지도인력 및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
3.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 · 운영
4.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
5.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생활체육의 진흥)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· 육성하여야 한다.

-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활체육단체의 관리 · 운영
2.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· 지원
3.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
4.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
5.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
6.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
7.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장애인체육의 진흥) ① 시장은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장애인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· 육성하여야 한다.

- ②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 체육회 조직의 관리 · 운영
2.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
3.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
4.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
5.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 · 운영
6.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
7. 그 밖에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학교체육의 진흥) 시장은 학교(「초 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

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(또는 체육용품)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비의 차등지원) 시장은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각각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체육단체 운영지원

제8조(적용대상) 시장이 지원하는 체육단체는 이천시 체육회와 이천시 장애인체육회 (이하 ‘시 체육회’라 한다)로 한다.

제9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시 체육회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·9·30>

제10조(운영비 산정기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시 체육회의 운영비를 산정한다. <개정 2023·3·14, 2024·9·30>

1. 이천시 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8명 이내로 한다.
2. 이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.

② 시 체육회 운영비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산금액 이내로 한다.

1. 사무직원의 인건비
2. 사업자 부담 제 보험료
3. 사업자 부담 퇴직적립금
4. 사무실 운영비

제11조(운영규정) 시장은 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임기, 채용, 복무, 상별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 체육회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제4장 포상 및 지도·감독 등

제12조(포상 등) ① 시장은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.

1. 시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
2.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시 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를 따른다.

③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, 각종 대회 개최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.

④ 시 체육회는 경기도체육대회 등에 입상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전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2·12·28]

제13조(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)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인건비, 공공요금 등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4조(용도 외 사용금지) ① 체육단체는 목적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법령 및 시장이 교부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체육단체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체육단체는 사업의 변경으로 그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체육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·감독 및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및 감사결과로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징계요구나 고발, 다음연도 해당 사업의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

있다.

제5장 체육진흥협의회

제16조(기능 및 구성) ① 시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시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.)를 둔다. <개정 2024

· 9 · 30>

1.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

2.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

② 협의회는 시장, 이천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 · 9 · 30>

③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④ 협의회 위원은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시장, 이천교육지원청장, 이천시 체육회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가. 이천시 체육회 또는 이천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자

나.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

다. 체육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

제17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8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

2022 · 12 · 28>

제20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,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의장의 명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[전문개정 2022 · 12 · 28]

제21조(위촉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

2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본조신설 2022 · 12 · 28]

제22조(수당 및 여비)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 · 12 · 28]

제6장 보칙 <신설 2022 · 12 · 28>

제23조(체육활동의 보험가입) 시장은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하고자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.

1. 이천 시민으로서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.

2.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.

[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 · 12 · 28]

제24조(자료제출) 시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 체육회에 사업비, 인건비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[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·12·28]

제25조(정산 등의 준용)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[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·12·28]
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·12·28]

부칙 <2020·6·30 조례 제1610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 한다.

부칙 <2022·12·28 조례 제188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14 조례 제190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·9·30 조례 제214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4 · 9 · 30>

시 체육회 운영비 총액의 산정기준

(제10조 관련)

구 분	산정 기준	비고
1. 사무직원의 인건비	제10조에 따른 정원에 직전년도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34조 별표13 제5호 가목에서 정한 6급(상당) 하한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	
2.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	매년 4대 보험기관*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	
3. 사업자 부담 퇴직적립금	사무직원의 인건비의 8.33%	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제1항
4. 사무실 운영비	사무직원의 인건비의 10% 이내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및 차량운영비 포함

* 4대 보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고용노동부,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.